

<b>의안 번호</b>	1308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b>검 토 보 고 서</b>
------------------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6. 12. 6.(화)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6. 12. 12.(월)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6. 12. 16.(금)

### 2.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 경리관→민간위원 중 호선(안 제2조 제2항)
- 나. 상위법령 중복 사항 삭제.
  - 위원회 위촉대상자(안 제2조제2항제1호~제6호)
  - 위원의 해촉(안 제12조제1호~제4호)
  -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안 제13조제1항제1호~제9호)
- 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삭제(안 제13조제1항)
-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6조의2 및 제109조

##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2016. 10. 17부터 11. 7까지 입법예고 실시로 주민의견을 들었으며,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관 계 법 령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